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2024. 1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 정계선 ·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차 례

1. 심사 의안 ····· 1

2. 심사 일정 ·····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2

가. 구성 경위 ····· 2

나. 활동 경과 ····· 2

다. 회의 경과 ····· 3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5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7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7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8

가. 위원장 인사 요지 ····· 8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 모두(冒頭)발언 요지 ····· 9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 12

5. 종합의견 ····· 28

6. 참고자료 ····· 31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 32

[참고자료 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 33

[참고자료 3, 별첨]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 서면질의 답변서 ····· 4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2024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1. 심사 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2. 심사 일정

가. 선출안 제출: 2024. 12. 9.

나. 선출안 회부: 2024. 12. 10.

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2024. 12. 18.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라. 인사청문

○ 2024. 12. 23.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마. 경과보고서 채택

○ 2024. 12. 24.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가. 구성 경위

○ 2024. 12. 9.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4. 12. 10. 동 선출안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같은 달 11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가 있었음.

- 더불어민주당 소속(7인): 김기표, 김남희, 김한규, 민병덕, 박주민, 박희승, 이용우 위원
- 국민의힘 소속(5인): 곽규택, 김기웅, 김대식, 박성훈, 정점식 위원
- 비교섭단체(1인): 김종민 위원

○ 같은 달 18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통보가 있었음.

- 사임: 이용우 위원(더불어민주당), 보임: 박지원 위원(더불어민주당)

○ 같은 달 1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박지원 위원(더불어민주당)
- 간 사: 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나. 활동 경과

○ 활동기간: 2024. 12. 9. ~ 12. 24. (16일 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2024. 12. 9. ~ 12. 17. (9일 간)

○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 12. 18.)

- 위원장 선임의 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처리

○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 12. 23.)

-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 12. 24.)

-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다. 회의 경과

○ 2024년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차에 걸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회됨.

○ 2024년 12월 17일 김한규 위원 등 8인으로부터 개회 요구서가 접수됨. 2024년 12월 18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하였음.

○ 2024년 12월 23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의 인사청문회 선서와 모두발언이 있은 후 위원들의 주질의(위원별 7분), 보충질의(위원별 5분), 재보충질의(위원별 3분) 및 공직후보자의 답변 등이 있었음.

○ 2024년 12월 24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회 의 경 과

일 시	관련 안건	비 고
<제1차> 2024.12.18.(수)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4.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5.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6.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장소 : 국회 제5회의장 (본관 220호)
<제2차> 2024.12.23.(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 국회 제3회의장 (본관 245호)
<제3차> 2024.12.24.(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장소 :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본관 319호)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1) 교섭단체별 요구 현황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무소속)
479건	415건	-	64건

(2) 대상기관별 요구·접수 현황

(단위: 건)

연번	기 관	요 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비고
1	감사원	6	5		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1)		1		
3	경찰청	23	10	13		
4	고용노동부	6	6			
5	공무원연금공단	7	6	1		
6	관세청	11	1	10		
7	교육부	36	6	13	17	
8	국가인권위원회	2	2			
9	국가정보원	1		1		
10	국무조정실	2	2			
11	국민건강보험공단	12	10		2	
12	국민권익위원회	4	4			
13	국민연금공단	5	5			
14	국방부	18(5)	5			
15	국세청	36	34	2		
16	국토교통부	29		2	27	
17	근로복지공단	4(3)	3			
18	금융감독원	8(7)	6	1		
19	농림축산식품부	6	5		1	
20	대법원	90	90			
21	대통령비서실	1		1		

연번	기 관	요 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비고
22	대한적십자사	4	2		2	
23	문화체육관광부	2	2			
24	법무부(검찰청 포함)	20	8	12		
25	병무청	11(24)	20	2	2	
26	보건복지부	3(2)			2	
27	외교부	7		7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5			
29	한국고용정보원	0(1)	1			
30	한국연구재단	1	1			
31	한국은행	4(5)		2	3	
32	행정안전부	12	11	1		
33	헌법재판소	103	100	1	2	
합 계		**479 (479)**	**350**	**70**	**59**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1) 서면질의서 제출

○ 서면질의 총 349건

교섭단체	위원명	서면질의 건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
	△ 김한규	43
	김기표	60
	김남희	39
	민병덕	54
	박주민	81
	박희승	50
국민의힘	곽규택	-
	김기웅	-
	김대식	-
	박성훈	-
	정점식	-
비교섭단체(무소속)	김종민	22
합 계		349

○: 위원장, △: 간사 위원

(2)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 서면질의 답변서: [별첨]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2인)	김한규, 박주민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위원장 인사 요지

○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기관임.

○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국가 헌법질서 수호 의지와 법률적 지식 및 역량 등을 충실히 갖추고 있어야 함.

○ 위원님들께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엄정히 검증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후보자 또한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람.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 모두(冒頭)발언 요지

○ 최근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의 도전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들여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추천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 저는 헌법재판관이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깊이 새기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음.

○ 저는 화진포가 부근에 있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1977년에 서울로 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1년에 대학에 진학하였고, 당시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저의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음. 1997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00년에 대구지방법원의 예비판사로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각종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우리법연구회, 노동법분야연구회 등 법원 내 연구회에서 활동해 왔음.

○ 저는 특히 연구회 등에서 주로 노동법 연구를 수행하였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근로조건의 대등결정, 자유결정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는 구성을 지향하였으며,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론 구성을 모색하였음. 저는 서울고등법원의 노동전담부 배석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여러 노동사건을 처리하면서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다양한 노동사건에 적용하도록 노력하였음.

○ 저는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음.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그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변경하고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저의 작은 노력은 결실을 맺었음.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한 이래 수많은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잡았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그 동안 확립한 성과에 기초하는 한편 세대·지역·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 정치적·경제적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

위기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하여서도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음. 나아가 헌법의 문언 그 자체를 넘어서서 헌법이 그 기초로 하고 있는 정치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음.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음. 또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저는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음.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림.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1)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신과 자질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헌법 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관련 규정이 있음.
○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국민들이 합의한 가치나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을 때 국민의 여론을 고려할 수 있는지?	○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님. 다수의 여론이 있고, 소수의 견해를 모두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다면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왔을 것인지?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 가정적인 상황이기는 하나 많은 국회의원들의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임. 12. 3. 사건에 대해 세계적인 평가가 있었고, 위원님들 생각에 공감함.
○ 후보자가 담당했던 판결 중 가장 의미있는 판결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6. 2. 4. 선고 2013가합11470)을 꼽았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 국가권력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하였음.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해왔으나, 2015년 판결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라는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9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는데, 본인의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기여했다고 생각함.
○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이 많으신듯 한데, 노사문제가 있을 때 사측에서는 후보자가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노동자에 유리한 판결만을 내릴 것으로 우려하면 어쩌나?	○ 「근로기준법」 자체가 노동자의 종속적 지위를 전제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본인도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등에 있어 반드시 노동자 입장에서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님.
○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관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 기업은 많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음.
○ 직접적인 헌법재판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저도 과거 헌법재판소 근무를 원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 헌법재판소의 구성·역할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 3 비상계엄 이후 우방국과의 협력, 경제지표 및 내수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 동의함.
○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9인 체제로 운영됨이 합당한 측면이 있음.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여론에 부응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 빨리 헌법재판관 구성이 완결될 필요가 있음. 후보자는 향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헌법재판관이 되시길 바람.	○ 명심하겠음.
○ 과거 이승만대통령이 연임을 위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부통령은 계엄을 비난하며 사직한 바 있으나, 현재 정부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함.	○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음.
○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지켜냄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함. 국민	○ 꼭 그렇게 하겠음.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소수자가 될 수 있음.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입맛에 맞는 의견보다는 우리 사회 소수자 및 약자의 의견을 반영한 소수의견을 많이 내어주시길 바람.	
○ 일각에서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이 있어 부적절하므로 추천을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했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에 따라 법률을 적용해 왔음.
○ 정치의 양극화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말씀하신 현상이 사실이라면 조금은 우려가 있음. 말씀하신 것 염두하겠음.
○ 언론에서 후보자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러한 성향들이 헌법재판 자체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개별적 판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음.

3)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2. 3. 비상계엄 및 탄핵심판 사건 관련>	
○ 12. 3.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행해진 권한 행사라고 하였음. 헌법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위헌 여부는 향후 탄핵심판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리나라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는 상황이었는지?	○ 향후 탄핵심판사건의 중요 쟁점이 될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관이 되었을때 그 결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비상계엄을 하는 경우 입법부의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계엄 해제와 관련된 입법부 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에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헌법에서는 계엄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기능에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계엄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이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비상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무력화	○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군인이 국회에 들어온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등은 향후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엄중히 따져주시길 바람	
○ 12. 3. 포고령에 따르면 제1호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었음.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포고령 제1호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문헌 자체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재판에서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헌법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계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법률의 규정 없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하게 됨. 계엄의 선포와 해제는 요건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음. 헌법이 계엄 해제에 대해 직접 규정한 것을 보면, 국회가 해제 요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 그렇게 이해해야 함.
○ 비상계엄은 다른 비상시국 대처 권한과 다르게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현행 「계엄법」에서 계엄해제에 있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계엄과 계엄해제를 달리 규	○ 헌법 취지에 맞게「계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정하고 있는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 12. 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회에 대한 통보가 없었음. 위헌적인 것이 아닌지?	○ 구체적인 사건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
○ 12. 3. 비상계엄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해제를 못한다고 했는데, 타당한지?	○ 구체적인 사건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
○ 현재 국무회의는 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국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게 할 경우, 국정 전반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장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 12. 3. 비상계엄의 발령과 해제 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데, 절차적 부분도 실체적 부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함. 절차적 흠결이 있는 상태로 비상계엄이 발령됐으면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않은지?	○ 절차적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안과 관련이 있어서 답변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람.
○ 12. 3. 계엄으로 인하여 법치주의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국가의 대외적 신뢰도가 하락하였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생각함. 위기는 기회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의 극복 과정이 전세계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함.

○ 대통령은 12. 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 가능한지?	○ 법률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종류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이 체포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법권 독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함.
○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탄핵심판을 하여야 함.	○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도록 하겠음.
○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절차가 왜 있는지? 반드시 중지해야 하는지?	○ 형사절차에서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헌법재판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고, 심판절차의 중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음.
○ 현행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여부에 대한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 문제의식에 공감함.
○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정한 헌법 규정은 유신헌법 때 포함된 것임. 국가의 원수는 행정수반을 뛰어넘는 최고의 지위라는 의미를 가짐. 이를 삭제하여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1979년 유신헌법 및 계엄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12. 12.사태를 위법하다고 보는지?	○ 그렇다고 생각함.
○ 대통령이 탄핵심판청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소환통보에 불응하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수호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 헌법수호의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함. 다만,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헌법수호의지 결여로 평가될 수 있는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구체적인 답변을 허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람.
○ 대통령이 탄핵심판청구서를 수령하지않고 있는데, 공시송달, 발송송달, 유치송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유념해서 살펴보겠음.
○ 대통령경호처에서 압수수색과 헌법재판소의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입해야하는 게 아닌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업무에 대해서 제가 식견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
<그간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심판 사건은 3건이 있음. 1건은 기각, 1건은 인용되었는데, 둘의 차이는?	○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파면이 될만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는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그 행위와 관련된 법정형을 비교하면 내

위반행위와 뇌물수수,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침입한 내란 행위 중 어떤 행위가 중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음.
○ 과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인용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했는데, 파면 대상자의 헌법수호의지 결여는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 그렇게 볼 수 있음.
<내란죄 관련>	
○ 5·18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음. 우리나라 헌법질서에 따르면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한행사를 막는 것은 용인될 수 없고,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후보자는 이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 내란죄와 관련하여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예전 독재정권의 경우 불법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게 맞는지?	○ 일반적으로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음.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고도의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내란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7년 판례에서 국헌문란 목	○ 「형법」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중요

적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이 이용되는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국헌문란의 목적 중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임. 국회 침입 및 무력화 시도는 내란죄로 보임.	한 판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고, 대통령의 긴급권이 내란죄가 아니라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하고 재직 중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음. 영국의 찰스 1세의 내란을 이유로 단두대 처형당한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특검법 관련>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 1인에 대하여 그 후보자 2인의 추천권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의 합의로 행사하게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이전 특검 도입 사례들에 비추어봤을 때,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에 대해 여당을 배제하는 특검후보 추천 과정이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동의함. 향후 사건화된다면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임.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수결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의회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당시에도 표결 당시 여당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의결되었는데, 이를 헌법상 의회주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 관련>	
○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 중인바, 최근 국무총리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 권한대행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궐위와 사고를 달리 보거나, 적극, 소극 권한을 나누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예산 관련 법률안이나 국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안, 「양곡관리법」등 농민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권한대행은 내재적 한계가 더 있는 것 아닌지?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한적인 것은 아니고 요건과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음.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는 경우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보임,
○ 대통령거부권에도 한계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자료에서도 본인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함.

및 그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대통령거부권에 한계가 있다고 검토하고 있음. 내란 관련 사항을 포함한 특검법등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궐위 등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 있음. 선출직 공무원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좋은 제안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헌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함.
○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 헌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음.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선출을 했고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지명했다면 대통령은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는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할 수 없다는 문헌이나 선례가 있는지?	○ 특별히 없음.
○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함.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가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 인사청문회에 여당이 불참한 결과 야당만이 참석한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국회가 추천절차를 거치는 것을 적법한 추천절차로 볼 수 있는지?	○ 그러한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기본권 관련>	
○ 최근 수사기관에서 통신기록 조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헌법 제10조가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답변한 후보자가 보기에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는 개인정보권 등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 수사기관의 통신기록 조회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과도하다면 제도 자체의 미비점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노란봉투법 관련>	
○ 예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폭력·파괴행위 이외의 노동 3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등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지배설에 관한 판례가 있고, 고등법원에서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지만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음. 노동쟁의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이익쟁의와 권

	리쟁의 모두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 취지가 입법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후보자의 도덕성・재산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09년 노회찬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여 법원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는데, 당시 노회찬의원은 현직의원이 아니었고, 두 분이 개인적 친분이 있지 않았는지? 후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 당시 전 의원 신분이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음. 연구소에 대한 후원금으로 후원한 금액은 30만원임.
○ 그 당시 아버님의 상에 노회찬 전 의원이 방문하였는지?	○ 노회찬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기 한 달 전쯤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열흘 후 본인의 처가 세상을 떠났음. 노회찬 전 의원께선 두 분 모두의 상을 와주셨고, 출판기념회를 가게 된 것은 저를 문상 와주신 것에 대한 답례 차원이었음.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러한 점이 반영되어, 징계가 아닌 구두경고에 그친 것임. 당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음. 당시 법원장께서 주의하라는 구두경고를 하셔서 이를 수용하고, 처신에 대한 지침으로 삼았음.

5. 종합의견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23일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였음.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 인사청문회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하여 ①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및 부속서류, ②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답변자료, ③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④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을 토대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각종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검증함.

○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후보자가 최근의 정치적 현안 및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신중한 태도로 자세한 답변을 보류하는 것에 대한 일부 청문위원의 우려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과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음.

① 서울지방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역임하는 등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노사문제 관련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온 점

②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관련된 대법원 판례 변경에 기여하는 등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와 소수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

③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고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명하였다는 점

④ 계엄선포를 비롯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위헌·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12. 3. 비상계엄이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국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의 발령 등이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선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등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점

⑥ 특별검사 후보추천과 관련하여 과거 대통령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제시된 기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사건화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소신 있는 태도를 피력하였다는 점

⑦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활동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법시험 합격 이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률을 적용하여 왔음을 소명하고 있고, 노회찬 전(前)의원 후원금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보다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있는 점

⑧ 주권자인 국민과 시대적·역사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최근 격화하고 있는 세대·지역·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마주함에 있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균형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6.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참고자료 2〕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별첨: 참고자료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 서면질의 답변서

〔참고자료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위원명단>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간 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김남희, 민병덕, 박주민, 박희승
	국민의힘	곽규택, 김기웅, 김대식, 박성훈, 정점식
	비교섭단체 (무소속)	김종민

<직원명단>

직 위	직 원 명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박동찬, 이화실
입법조사관	김세현, 박지영, 유항재, 모주영, 이정미, 정수정, 최준호, 이혜미, 문정호, 소만경, 김태현, 박은정, 최한슬, 박진영, 이상민, 김홍규, 최용구, 이강욱
행정실장	정진욱
행정관	임채현, 김기연
주무관	김민옥, 박옥서, 김수자, 임현숙, 이미숙, 이지영
과 장	유규영
주무관 및 법제관보	장윤명, 임희경, 차인창

〔참고자료 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 정계선 · 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2024. 12.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목　　적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실시일

2024. 12. 23.(월) 10:00 마은혁 후보자

2024. 12. 23.(월) 14:00 정계선 후보자

2024. 12. 24.(화) 10:00 조한창 후보자

※ 붙임 1: 의사일정(안)

4.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신문, 보충질의·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한다.

나.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이 있는 경우 청문회 중 신문순서 및 위원별 신문시간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마. 위원이 질의 중 시청각 자료(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소요경비

증인 여비 등 소요경비는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8.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o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국회전자게시판에 「붙임 2-1~3」과 같이 공고한다.

나. 언론관계

o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 및 방송기기의 설치는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인사청문회 방청

o 일반방청은 위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위원장이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붙임 1]

의 사 일 정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2024.12.18.(수)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4.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5.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6.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장소 : 국회 제5회의장 (본관 220호)
<제2차> 2024.12.23.(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 국회 제3회의장 (본관 245호)
<제3차> 2024.12.24.(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안건, 회의일시, 회의장소는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1]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 2024. 12. 23.(월) 10:00

3. 장 소 :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

2024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참고자료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

2024. 12.

공 직 후 보 자(마 은 혁)

목 차

김한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45

김남희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09

민병덕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54

박주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214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301

김종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360

김한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 할 수 있다” 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법원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사법심사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폐쇄'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라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형법제87조 상 '폭동'에 해당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기수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론이 나기 전에 상설특검이 추천 및 임명된다면 해당 심리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만약 위헌 적인 것으로 결정날 경우 특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위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습니다(2024헌라7).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내란죄의 정범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내란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법원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사건에서 위 질의와 관련된 사항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4년 12월 3일 22시 기준, 대한민국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무회의의 심의 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부서한 문서가 없는 경우, 해당 국무회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요건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사건에서 위 질의와 관련된 사항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비상계엄 선포 시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비상계엄 선포 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방식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의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명령 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비상계엄 선포 시 의료인을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계엄법 상 '동원 또는 징발'에 해당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시킬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압수수색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비상계엄 해제 이후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표결 이전 자신의 경호인력을 대동하고 국회를 방문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국회에 대한 폭력 혹은 위협 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7. 국회 방문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대통령 경호처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헌법상 규정도니 영장제도를 침탈하는 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원론적인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였다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위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내란죄는 언제 종료된다과 생각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법원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2024헌마1109 등), 탄핵심판 사건도 계속되어 있으며(2024헌나8)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사건에서 위 질의와 관련된 사항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내란죄의 기수가 인정된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헌재 2024. 8. 29. 2023헌나4 등 참조).

○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2024헌나8).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에 의한 직무정지 없이 특정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한다면 이는 합헌적 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주권 행사를 위임받았으므로 그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고, 이는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에 의한 직무정지 없이 특정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가정적 상황을 상정하여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대통령이 자의에 의해 2선 후퇴를 밝힌다면 이를 뒷받침할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2선 후퇴'라는 가정적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헌법 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사고'란 ①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 헌법 상 '궐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궐위'란 ① 대통령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②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③ 대통령 취임 후 피선자격의 상실 및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2선 후퇴, 국정 위임은 헌법 상 '궐위' 나 '사고'에 해당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궐위'란 ① 대통령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②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③ 대통령 취임 후 피선자격의 상실 및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의 '사고'란 ①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주권 행사를 위임받았으므로 그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고, 이는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국정 위임'이라는 가정적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심판절차 정지 여부는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8.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졸속으로 심리를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므로 충분한 변론절차 및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9.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유는 무엇인지

○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도,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아니하는 가정적 상황을 상정하여 그 위헌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만약 이렇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재판관 6명 체제가 가동되는데, 후보자는 재판관 6명이서 헌재 사건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만약 적용된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2024헌나1)과 관련하여,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4. 10. 14. 2024헌사1250).

○ 다만, 위 가처분 결정은 심리정족수에 관한 것이고, 최근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언론을 통하여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6명이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가처분 결정으로 내린 결정인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2024헌나1)과 관련하여,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4. 10. 14. 2024헌사1250).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2024헌마900),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이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추천 및 임명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미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재판관들이 들어오면 되는 것인데. 초반에야 준비기일을 다시 하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재판이 진행된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앞선 기일을 다시 다 갱신해야한다고 보는지?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변론기일을 갱신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01조에서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변론절차를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심리에 직접 관여하여 심증을 형성한 재판관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에는 변론절차를 갱신함으로써 사건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따라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증거조사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향후 심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손준성 건처럼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은 무조건 멈춰진다고 보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병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2023헌나3)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그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한 매 재판을 공개 변론을 여는 것에 찬성하는지. 그 이유는?

○ 헌법 제109조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위 헌법 조항의 요청은 헌법재판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역시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의 하나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심판 등 사건에서 변론 비공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5.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결정을 빨리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이에 대한 한쪽에서는 혼란을 일축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형사 재판 사건이 나오기 전에 빨리 결론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헌재가 너무 사건을 일찍 규정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후보자 입장은 어떠한지?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졸속으로 심리를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므로 충분한 변론절차 및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6. 정형식 재판관이 혼맥으로 얽혀있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사실상 방탄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후보자 입장은 어떠한지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인사권 행사 또는 현직 헌법재판관의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결론이 나기 전에 상설특검이 추천 및 임명된다면 해당 심리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만약 위헌적인 것으로 결정날 경우 특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위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2024헌라7).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사회 일각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는 이 같은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되었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현행 헌법은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해당 의혹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직무정지 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정확히 어떤 권한등을 대리하는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하는 권한에서 차이가 있는가?

- 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 대리하는 권한을 정확히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궐위’란 ① 대통령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②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③ 대통령 취임 후 피선자격의 상실 및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하고, 대통령의 ‘사고’란 ①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에 이르게 된 사유에 따라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견해와 궐위와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므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도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

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직무정지 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있는가?

○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음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있는가?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궐위’란 ① 대통령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②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③ 대통령 취임 후 피선자격의 상실 및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하고, 대통령의 ‘사고’란 ①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에 이르게 된 사유에 따라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견해와 궐위와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므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도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대통령의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있는가?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궐위’란 ① 대통령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②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③ 대통령 취임 후 피선자격의 상실 및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하고, 대통령의 ‘사고’란 ①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에 이르게 된 사유에 따라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견해와 궐위와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므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도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의 성격과,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의 성격이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궐위’란 ① 대통령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②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③ 대통령 취임 후 피선자격의 상실 및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하고, 대통령의 ‘사고’란 ①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에 이르게 된 사유에 따라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견해와 궐위와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므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도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헌법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해석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 배경이 되는 정치현상에 대한 식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은 결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결정의 논증이 상세하면서도 치밀하게 이루어져 관계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전망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후보자가 스스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25년 정도 법관으로 재직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해석·적용하면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노력,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등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3.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이유는?

○ 아직 후보자인 입장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반드시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력,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등을 토대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 또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본연의 업무인 헌법재판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헌법재판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 공자(孔子)를 존경합니다.

5.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의미있는 판결과 그 이유는?

○ 후보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3가합11470 판결/합의부 재판장).

- 위 판결 선고 당시 대법원은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하여 긴급조치 1, 9호를 위헌·무효로 보면서도, 다른 판결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부정("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함으로써 위 위헌·무효 판결의 의의가 퇴색한 상태이었습니다.

-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정하여진 긴급조치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사익보호성 있는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발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설령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

다. 그 후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위 판결과 같은 취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결국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다른 하급심 판결과 함께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변경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힘들었던 판결과 그 이유는?

○ 가장 아쉬웠던 일은 검찰의 선별 기소에 대하여 공소권 남용 법리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저의 지혜가 부족하여 상급심을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7. 법관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원론적인 입장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집행상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이므로, 탄핵 대상이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탄핵소추가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관에 대한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헌법이 법관에 대하여 신분보장 규정을 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인적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헌법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를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가치 기준과 규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가치관과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다양성의 기준 중에서는 가치관 내지 철학의 다양성과 성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은 그 다음의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은 사법작용의 일종인 만큼, 헌법과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일정한 수의 비법률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구성의 경계를 넓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사형제 존폐에 관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라는 점 및 오판의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는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하를 통한 일반예방적 효과 및 피해자의 응보감정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형제 존폐는 국민의 법감정, 시대상황, 세계 각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친 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체수단 도입과 함께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1996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헌재 1996. 11. 28. 95헌바1), 2010년 재판관 5:4의 의견으로(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현재 다시 관련 사건이 계속 중입니다(2019헌바59).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최종건의문에서 '하급심 강화'의 한 내용으로 '전문법원의 설치' 항목에 장기과제로 '효율적·전문적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전문법원 또는 전문재판부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법원 내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노동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1.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원이 영장발부 전에 수사기관과 변호인 등을 사전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에 대해 과잉 발부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려 할 때 합당한 사법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의견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에 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3.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 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지는 않으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명심하면서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번 법관이 되면 굳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아도 되는 평생법관제의 정착이 전관예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유무형의 보상 강화나 인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이 전직할 동기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조일원화 이후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척사유 규정, 사건 재배당 등의 대응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제247조) 검사에게 기소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그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제의 합리적 기준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국민적 합의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높은 배상액을 통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손해배상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과잉배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6.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다른 기관인 검찰의 개별적인 수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데이트폭력은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을 단순한 다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고, 초기에 경미한 수준이더라도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협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기 쉬우며 신고 등 빠른 대처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판결도 있으나, 데이트폭력을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일 뿐이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수한 관계를 양형 기준에 공식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범죄의 결과물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도 그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관련하여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양형기준을 상향하여 과거보다 엄정한 양형이 이루

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별 사건마다 양형의 판단 요소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처벌 강화에 대하여 논하기는 어려우나, 데이트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방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도 심화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데이트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발생한 이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남기므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정부의 시행령 마련 시 상위법의 입법(개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은 상위법령인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 같은 헌법 조항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에는 모법의 위임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최근 10대 초반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는 상당히 잔혹한 범죄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3세 또는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중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신체적·정신적 성장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과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이는 국민 여론, 소년범 관련 통계자료, 형사미성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 성범죄 법정형 상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호, 성범죄의 심각성 및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법정형의 상향이 가해자의 교정가능성이나 성범죄의 예방 등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과잉처벌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법정형의 문제라기보다는 양형에 대한 문제이며, 개별적인 사안에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상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1. 조건부 구속 영장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전자장지 부착 등 조건을 달아 일단 석방하고 위 조건을 어기는 경우 구속하는 것과 같은 조건부 구속영장제도가 도입되면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할 수 있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례성 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수사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조계와 학계의 연구, 외국 입법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일 텐데, 인신구속제도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측면과, 범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병확보의 수단이라는 측면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과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 처벌 조항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조항의 폐지 여부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매체환경,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한 위축효과, 사생활의 자유 및 인격권에 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과 관련하여 2021년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모욕죄 처벌 조항과 관련하여 2020년 재판관 6:3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등). 기본적으로 해당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해당 결정에는 경청할 만한 반대의견도 존재하였으므로, 향후 해당 조항에 대한 사건이 다시 제기된다면 그 위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 법왜곡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최근 독일, 스페인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법왜곡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가 발의한 법왜곡죄는 수사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왜곡죄의 도입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수사 위축과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법왜곡죄의 도입 여부는 해외입법례·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포함하여 입법 의도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국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4. 고위공직자의 청탁 물품 수령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5.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과 한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학계에서도 한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할 경우 구체적인 한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당부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사건처리 지연의 해결, 재판의 전문화, 평생법관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건처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고, 재판과 관련하여 법관을 지원할 연구원 등 인력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민, 형사 재판 이외에 건설사건, 의료사건, 노동사건 등 특별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전담부의 확대, 장기근무법관제의 확대가 필요하고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통하여 안정적인 법관 충원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훈련된 인력이 중도에 법원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보상 확대, 시니어 판사 제도의 도입 등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관예우 등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 평생법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통하여 안정적인 법관 충원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훈련된 인력이 중도에 법원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보상 확대, 시니어 판사 제도의 도입 등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관예우 등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 법조계 기수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개선 방향은?

○ 우리나라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조계에 이른바 기수문화가 남아 있는 편이라는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전부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연고주의나 서열 문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법조인력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이른바 기수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는 현상도 관찰됩니다.

29.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 우선, 법관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함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사법부에 충원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부여하고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이 재판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30.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2018. 1. 1.부터 시행되어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 종교인 내지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종교단체에서도 각종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종교단체는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단체라는 특수성과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비수익사업의 기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교인의 과세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안이며,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적 정서, 종교 활동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1. 현재 대한민국의 다양한 인권 문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인권의 문제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체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서 다루어지는 인권 문제부터 우선 집중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노동법 분야에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관련 문제 해결에 특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헌법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를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가치 기준과 규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가치관과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다양성의 기준 중에서는 가치관 내지 철학의 다양성과 성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은 그 다음의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은 사법작용의 일종인 만큼, 헌법과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렵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일정한 수의 비법률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구성의 경계를 넓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여 주시기를 감히 청합니다.

33.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수사기관의 폐지 및 신설, 기소권 행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속칭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2)에서 위 개정안 통과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결정한 사안과 관련하여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와 관련된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별도의 수사청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폐지 및 신설, 기소권 행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5.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회복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우선, 공정하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 구성원들의 직업윤리 확립 및 실천도 중요합니다.

○ 사법부의 독립도 제도적으로 더욱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36. 존엄사 찬반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존엄사의 의미와 존엄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있고, 존엄사 허용 여부에 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계속되어 있습니다(2023헌마1396).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공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중 우선시되야하는 것은?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인하여 공적 인물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억압받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 관련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공적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적인물의 공적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업무집행의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

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 이는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두 상충하는 기본권 중 어느 하나를 앞세우기보다는 조화롭게 향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합니다.

38. 헌법재판관 자격요건 완화 및 확대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였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이 헌법 및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닐 것을 보장하여,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인 헌법재판의 기능과 성격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은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법률 해석 및 적용 능력이나 실무 경험보다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관한 지식과 식견, 인권에 대한 이해와 철학 등이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조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교수 등 비법조인에게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해외 입법례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은 우리 사회에 가치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그 과정에 다채로운 가치관과 철학이 반영되도록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조인 외로 완화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헌법개정사안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9. 헌법재판관 퇴임 후 후보자가 생각하는 진로는?

○ 저는 헌법재판관이 되어 퇴임하게 된다면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40. 법관의 개인 SNS를 통한 의견 개진에 관해 후보자의 생각은?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2015년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공표하였습니다. 위 권고의견 제10호에서도 인용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은 “법관도 직무 외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주체이므로, 공공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명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관의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 법관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법관은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절제되고 균형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종국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관은 개인 SNS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 정치적 소신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으로서, 철저히 중립적이고 엄정한 가치를 기반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

○ 헌법 제103조,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의하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좌우되거나 그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고,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 왔고,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도 정치적 고려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혹시 저의 생각이 치우친 것이 아닌지를 항상 돌아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2.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충돌하는 전통적 헌법 해석이 있는지?

○ 앞으로 헌법 해석이 다투어지는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재판절차 외에서 미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사법농단에 연루된 재판관의 변호사 재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변호사의 자격등록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등록심사위원회, 법무부장관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법관 기피신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관 기피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입니다.

○ 현행 기피제도에 관하여 기피사유가 추상적이고 실무상 거의 인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피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기피권이 남용되면 소송지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 사법부의 AI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재판에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은 앞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발달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좋은 재판을 하도록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 점은 인공지능(AI) 기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투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섣불리 활용하는 것은 경계할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궁극적으로 재판을 인공지능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46.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있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도 집단소송에 해당하는 제도가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거나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도 집단소송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하는 집단소송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집단소송제도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민사소송절차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7.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마약류 사범은 2010년 9,732명에서 2020년 18,050명으로 2배가량 급증하였고, 2023년 27,611명으로 최근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세는 29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층이 주도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20세 이상 2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521명에서 2023년 8,36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SNS가 마약류 유통 경로로 활용되면서 SNS 이용 빈도와 수용성이 높은 젊은 층이 마약류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통관검사 강화를 통한 마약류의 불법유통 차단,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홍보·교육 시행 등 마약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범죄를 근절할 효과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48.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기관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예에 따라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논의를 기초로,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 방안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의 편의, 이전에 따른 효과의 정도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9.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렉카 등의 사적 제재가 유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지적이라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 최근 일반인의 치부를 폭로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버렉카' 등의 사적 제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고, 이러한 사적 제재의 유행이 일부 범죄의 처벌 등과 관련하여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인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한다는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법관들 사이의 활발한 양형토론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원에서는 양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좀 더 사회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0.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다른 기관인 검찰의 수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1.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법의 해석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적 질서를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인지?

○ 헌법은 시민의 정치적 합의이며 결단이고, 헌법재판은 헌법에 내재된 국민의 진정한 정치적 의사와 시대적 요구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한편, 다수에 의한 지배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는 일이 잦지만, 이는 다수결에 앞서 평등하고 공개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내용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을 토대로 법률의 정당성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이 다수에 의하여 지지받았다는 것 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법되었는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지 등 헌법이 부여한 여러 가치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2.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 여론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인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한다는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면 수정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하여 그 책임에 비례하는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 대부분의 재판관이 무죄를 받으며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아직 계속 중인 관련 재판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한 언급을 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사법부의 정치 중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야할 일은?

○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함을 명심하고 재판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절차 외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 공정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개인적 다짐이나 원칙은 무엇인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건 당사자를 넘어 사회 전 영역에 파급력을 가지므로, 헌법재판관이 표면적 분쟁과 갈등 해결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를 발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열린 자세로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경청하여 균형감 있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에 더하여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국민의 기본적 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저는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는 당사자 등 여러 집단의 주장을 경청하겠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정치인 등과의 일체의 사적인 접촉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56. 대한민국 권력구조와 민주적 정당성 이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상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국회(제41조 제1항)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대통령(제67조 제1항)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 우리 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헌법상 권한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7.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요청하고 있고, 헌법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헌법재판관 임명, 지명 권한은 국가권력의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임명, 지명된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 등의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헌법이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8. 계엄법의 필요성과 계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구체적인 계엄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법률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계기로, 다수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그중에는 계엄 시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며, 계엄사령관에게 국회 기능을 수호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특정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나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헌법 해석과 판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과 판단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과 규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수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과 판단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재판관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 이익집단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60.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설득력 있는 해석이 중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설득력 있는 해석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 향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전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여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과 규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관으로 재직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등에 관한 주장을 면밀히 살펴, 헌법적 문제나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과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 공자(孔子)를 존경합니다.

2.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입니까?

○ 김병로 전 대법원장을 존경합니다.

3. 후보자 좌우명은 무엇인가.

○ 후보자의 좌우명은 ‘성의를 다한다’입니다.

4. 후보자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어사전에서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이라고 합니다. 정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갈망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나 철학적 의미에서의 정의의 개념은 그 추상 수준이 높고 초역사적인 것이어서 질문하신 정의의 개념을 위와 같은 측면에서 논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전문에서 "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민족 단결의 지향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본래 정의의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평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의 상태가 정의의 요구에 합치된다는 일정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말에 그 요체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근대입헌주의의 평등의 원리는 형식적 평등에 머물고 말았고, 현대의 사회복지국가 헌법에서는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것도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

회국가에 관하여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라고 하고 있는데,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문제가 곧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과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판시라고 할 것입니다.

5. 후보자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입니까?

○ 후보자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토지(박경리)입니다.

6.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1건, 아쉬움이 남는 판결 1건

○ 후보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3가합11470 판결/합의부 재판장).

- 위 판결 선고 당시 대법원은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하여 긴급조치 1, 9호를 위헌·무효로 보면서도, 다른 판결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부정("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함으로써 위 위헌·무효 판결의 의의가 퇴색한 상태이었습니다.

-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정하여진 긴급조치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사익보호성 있는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발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설령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위 판결과 같은 취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결국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다른 하급심 판결과 함께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변경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장 아쉬웠던 일은 검찰의 선별 기소에 대하여 공소권 남용 법리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저의 지혜가 부족하여 상급심을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7. 후보자 법관으로 재직하며 판결했던 사건 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유는?

○ 2009. 11. 5. 한미FTA 비준 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대해 국회의사당 로텐더 홀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당시 민주당 당직자들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함께 연좌농성을 벌였는데, 검사가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약식기소하고 민주당 당직자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동일 사건 피의자들을 차별 취급한 것으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위 판결 선고 전에 후보자가 고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고 노회찬 전 의원과의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은 그 직전에 잇달아 발생한 후보자의 가족상(아버지와 배우자)에 고 노회찬 전 의원이 2번 모두 문상을 와 준 것에 대한 답례로 참석한 것이고,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과 위 공소권남용 판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 판결은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에 기초하여 공소권남용에 관한 판례와 형사소송법 교과서의 내용, 공소권남용에 관한 박사학위논문 등의 문헌을 검토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8. 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 및 지명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저는 25년 정도 법관으로 재직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해석·적용하면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노력,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등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9. 헌법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해석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 배경이 되는 정치현상에 대한 식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은 결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결정의 논증이 상세하면서도 치밀하게 이루어져 관계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전망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 역할이자 헌법재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력,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등을 토대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싶은 일은?

○ 아직 후보자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을 꼽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사명에 맞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점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2. 헌법재판소 설립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판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지난 36년간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명을 다하여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과정에서 선고한 결정 모두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그중에서도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 결정(헌재 2018. 4. 26. 2016헌바454),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결정(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간통죄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위안부 배상청구권 관련 위헌 결정(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등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의 결정 중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

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결정(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등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우선, 법관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함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사법부에는 칼도 없고 돈도 없지만 법관들은 칼과 돈의 압박 등에 굴하지 않는 기개와 강단을 단련하여야겠습니다.

○ 다음으로 사법행정이 법관의 판단 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칼과 돈의 힘이 사법행정을 통하여 은밀하게 스며드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 농단 문제 등의 처리 과정에서 이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사법행정의 관료화 등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법관이 재판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넘어선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홀로 외로이 판단하는 법관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자제되어야 합니다.

○ 행정부가 지금처럼 사법부의 예산요구를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 또는 독립의 외관을 해치므로, 적어도 사법부가 총액 한도 내에서는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부

의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은 국회의 통제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4. 헌법재판소의 재판헌법소원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그 취지에 따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헌재 2022. 7. 21. 2013헌마242).

○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만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일반적인 분쟁에 관한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등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이처럼 양 사법기관 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권리구제의 실효성, 헌법재판의 역사 등을 고려하여 입법을 통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5.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재판관 수 증원이 논의되고 있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또한,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후임 재판관을 선임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심리, 선고의 정족수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도 재판관 수 증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내부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재판관 수 증원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수 증원은 헌법개정사안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6.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성별, 나이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헌법재판관은 이해관계의 대립과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가치관과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다양성의 기준 중에서는 가치관 내지 철학의 다양성과 성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은 그 다음의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은 사법작용의 하나로 헌법과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도 요구되지만, 일정한 수의 비법률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여 주시기를 감히 바랍니다.

17. 현재 헌법재판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건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장기간 근무하며 사건 심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헌법연구관,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절차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직원의 역량과 태도, 연구부와 사무처 각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사건 심리의 충실성, 신속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도록 업무환경 등 여건을 조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조직 운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관의 공석 상태는 그 무엇보다 사건 심리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8.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고 보는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은 시민의 정치적 합의이며 결단이고, 헌법재판은 헌법에 내재된 국민의 진정한 정치적 의사와 시대적 요구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헌법재판의 결과가 정치, 사회, 경제 등 영역에 미치는 파급력도 큽니다. 또한,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맥락과 동떨어져 해석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헌법 제103조,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의하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에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좌우되거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고,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재판관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 이익집단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전관예우 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전관예우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명심하면서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그러한 외관이 갖춰지는 것에 대해서도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한번 법관이 되면 굳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아도 되는 평생법관제의 정착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유무형의 보상 강화나 인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이 전직할 동기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전관예우 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전관예우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명심하면서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외관도 갖추겠습니다.

○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퇴임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에는 종사하지 않겠습니다.

21.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인권의 문제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체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서 다루어지는 인권 문제부터 우선 집중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노동법 분야에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관련 문제 해결에 특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형제 존폐에 관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라는 점 및 오판의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는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하를 통한 일반예방적 효과 및 피해자의 응보감정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형제 존폐는 국민의 법감정, 시대상황, 세계 각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친 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체수단 도입과 함께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1996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헌재 1996. 11. 28. 95헌바1), 2010년 재판관 5:4의 의견으로(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현재 다시 관련 사건이 계속 중입니다(2019헌바59).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는 상당히 잔혹한 범죄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 책임이 준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 하지만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과 교육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므로 소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인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소년법 폐지는 국민 여론, 소년범 관련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4. 남녀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는?

○ 성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으로, 남성과 여성에 한정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을 포괄하는 점에서 남녀평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5.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 그 원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성별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OECD에 의하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를 기록하여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기본급에서의 차이, 남성중심적 성과평가, 유리천장, 핵심업무 배제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2006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대 및 징벌체계의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 실시,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성평등한 성과평가제도의 도입,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의 개선,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의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 다양한 갈등의 양상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의 양상 3가지와, 그중 가장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꼽아 주십시오.

○ 사회갈등의 양상 중 최근에는 정치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 젠더에 따른 갈등,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극단적 대립은 해소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에서는 젠더 갈등이 특히 심각해 보이는데,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재생산을 위한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세대 간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7.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했음.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파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각 영역별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개별 영역의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포괄되지 않는 영역이 있고, 복합차별의 문제도 있으며, 구제절차 등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개별 영역의 차별금지법을 아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 대립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사회 각층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로서, 사적인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지속적인 갈등이 있어온 만큼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오해를 풀어가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8. 아동 성범죄자의 국내 처벌 및 양형 정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인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한다는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개별 사건마다 양형의 판단 요소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국내 처벌 및 양형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9. 우리나라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디지털성범죄자의 국내 처벌 및 양형의 정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범죄의 결과물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관련하여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양형기준을 상향하여 과거보다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 날로 진화하고 그 피해도 심화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 사형제 존폐와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

○ 사형제 존폐와 관련해서는 22항 답변과 같습니다.

○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28항 답변과 같습니다.

31.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민간기업을 통한 피해 보상안(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023년 정부가 국내 재단을 통한 피해 보상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의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외교적으로 첨예한 논쟁이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견해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인권보장과 법치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최선의 해결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현재의 장애 상태가 초래된 애초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여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할 의무가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에 대한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우리 정부에게 그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 또한, 대법원은 2018. 10. 3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강제징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일본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34. 우리 정부가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금전 배상책임을 주장할 경우 일본 측과의 소모적인 법적 논쟁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국익이 훼손된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대법원은 2018. 10. 3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강제징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견해를 표명하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따라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대법원은 2018. 10. 3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강제징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6.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약 체결국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에 대해 일본 내 원폭 피해자 등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 일본 정부 책임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 이유는?

○ 해당 소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그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위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 이유는?

○ 해당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밝힌 견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그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원고들이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단하여,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위 판결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38.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원고들이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단하여,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위 판결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 후보자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대법원은 2018. 10. 3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강제징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견해를 표명하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후보자 법관으로 재직하며 판결했던 사건 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유는?

○ 2009. 11. 5. 한미FTA 비준 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대해 국회의사당 로텐더 홀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당시 민주당 당직자들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함께 연좌농성을 벌였는데, 검사가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약식기소하고 민주당 당직자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동일 사건 피의자들을 차별 취급한 것으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위 판결 선고 전에 후보자가 고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고 노회찬 전 의원과의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은 그 직전에 잇달아 발생한 후보자의 가족상(아버지와 배우자)에 고 노회찬 전 의원이 2번 모두 문상을 와 준 것에 대한 답례로 참석한 것이고,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과 위 공소권남용 판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 판결은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에 기초하여 공소권남용에 관한 판례와 형사소송법 교과서의 내용, 공소권남용에 관한 박사학위논문 등의 문헌을 검토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명예가 실추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1건

○ 후보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3가합11470 판결/합의부 재판장).

- 위 판결 선고 당시 대법원은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하여 긴급조치 1, 9호를 위헌·무효로 보면서도, 다른 판결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부정("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함으로써 위 위헌·무효 판결의 의의가 퇴색한 상태이었습니다.

-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정하여진 긴급조치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사익보호성 있는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발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설령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

다. 그 후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위 판결과 같은 취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결국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다른 하급심 판결과 함께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변경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판결 1건

○ 가장 아쉬웠던 일은 검찰의 선별 기소에 대하여 공소권 남용 법리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저의 지혜가 부족하여 상급심을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5. 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 및 지명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저는 25년 정도 법관으로 재직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해석·적용하면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노력,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등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6. 헌법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해석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 배경이 되는 정치현상에 대한 식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은 결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결정의 논증이 상세하면서도 치밀하게 이루어져 관계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전망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 역할이자 헌법재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력,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등을 토대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아직 후보자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을 꼽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사명에 맞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점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9. 헌법재판소 재판관 징계절차 규정 미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헌법재판관은 높은 청렴성,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구체적 규정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헌법재판소 설립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판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지난 36년간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명을 다하여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과정에서 선고한 결정 모두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그중에서도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 결정(헌재 2018. 4. 26. 2016헌바454),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결정(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간통죄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위안부 배상청구권 관련 위헌 결정(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등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의 결정 중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결정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등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우선, 법관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함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사법부에 충원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부여하고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이 재판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행정부가 지금처럼 사법부의 예산요구를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 또는 독립의 외관을 해치므로, 적어도 사법부가 총액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부가 사법부의 예산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역할 조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각각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 우리 헌법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외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부여한 독자적인 권한에 기하여 각각 일반재판기능과 헌법재판기능을 담당하는 최고사법기관입니다.

○ 다만, ① 변형결정 중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문제, ②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배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해석, ③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 등으로 인하여 양 기관의 역할이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 현행 법률 아래에서 양 기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책무를 지닌 헌법기관으로서, 가급적 위와 같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에 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하

고 사법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권리구제의 실효성, 헌법재판의 역사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을 통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3.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변형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원칙에 기초한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며, 단순위헌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의 효력만을 상실시키는 것은 때로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변형결정은 그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권한에 속하므로, 위헌결정의 일종인 한정위헌결정도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최종적인 법률해석의 권한을 가지므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다른 법률해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변형결정을 할 때 달성하고자 하였던 법적 안정성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위헌법률심사를 하고, 법원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견해를 달리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향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혼란

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을 경우, 타 국의 사례를 수용·비교하며 재판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 헌법재판에서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외국의 입법례 내지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있고,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밝히기 위하여 입법 과정에서 참고하였던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 조항 중에서도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 기본법 등을 참고한 것이 있으므로, 그 의미를 밝히는 데에 해외 헌법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나 존엄사 같은 새로운 의제가 헌법재판의 쟁점이 되었을 때에는 외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각국의 법이 적용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르고, 외국의 제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넘어 그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용되는 양태를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논증이나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자유와 평등,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 사례를 적절히 활용, 참고하겠습니다.

15.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법부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부 기관 간의 대립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변형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원칙에 기초한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며, 단순위헌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의 효력만을 상실시키는 것은 때로 불가피합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최종적인 법률해석의 권한을 가지므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다른 법률해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변형결정을 할 때 달성하고자 하였던 법적 안정성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위헌법률심사를 하고, 법원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견해를 달리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향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 헌법재판소의 재판헌법소원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그 취지에 따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헌재 2022. 7. 21. 2013헌마242).

○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만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일반적인 분쟁에 관한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등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이처럼 양 사법기관 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권리구제의 실효성, 헌법재판의 역사 등을 고려하여 입법을 통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7.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재판관 수 증원이 논의되고 있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나아가 재판관 퇴임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결원이 발생하여 심리, 선고 정족수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있고 이와 관련한 대책 중 하나로 재판관 수 증원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재판관 수 증원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수 증원은 헌법개정사안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성별, 나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헌법재판관은 이해관계의 대립과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가치관과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다양성의 기준 중에서는 가치관 내지 철학의 다양성과 성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은 그 다음의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은 사법작용의 일종인 만큼, 헌법과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일정한 수의 비법률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구성의 경계를 넓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사법적(司法的)으로 해결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건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를 수호할 기본적인 소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후보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7번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하는지?

○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25년 정도 법관으로 재직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해석·적용하면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노력,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등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22. 현재 헌법재판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건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장기간 근무하며 사건 심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헌법연구관,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절차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직원의 역량과 태도, 연구부와 사무처 각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사건 심리의 충실성, 신속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도록 업무환경 등 여건을 조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조직 운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관의 공석 상태는 그 무엇보다 사건 심리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3.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고 보는지?

○ 헌법은 시민의 정치적 합의이며 결단이고, 헌법재판은 헌법에 내재된 국민의 진정한 정치적 의사와 시대적 요구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헌법재판의 결과가 정치, 사회, 경제 등 영역에 미치는 파급력도 큽니다. 또한,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맥락과 동떨어져 해석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헌법 제103조,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의하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에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좌우되거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고,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24.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재판관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 이익집단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전관예우 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지는 않으나, 전관예우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명심하면서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그러한 외관이 갖춰지는 것에 대해서도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한번 법관이 되면 굳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아도 되는 평생법관제의 정착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유무형의 보상 강화나 인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이 전직할 동기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6.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전관예우 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지는 않으나, 전관예우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명심하면서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외관도 갖추겠습니다.

○ 헌법재판관이 전관예우 우려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예컨대 평생법관제의 정착, 퇴직 법관의 수임 제한 제도 등 변화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되어 전관예우 우려 해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역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 거취에 대한 견해는?

○ 저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다면 퇴임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28.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던 사건의 건수와 목록(사건번호 또는 판례번호)은 무엇인가요?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헌법적 쟁점 한 가지를 꼽자면 무엇인가요?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건이 있는지?

○ 후보자가 2010년경 1건의 소송의 피고가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6323). 원고 김○○이 앞서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했던 1심 판사(후보자)와 2심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그 밖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1. 후보자는 자녀들의 특정 학교 입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또는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2.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정당·시민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 과거 후보자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1989), 진보정당추진위원회(1992)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으나 공직자가 된 이후로는 일체 정당·시민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33.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4. 후보자가 국내외 공무출장 또는 해외연수에 배우자,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 후보자의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 내역은 아래와 같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동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순번	일시	장소	사유
1	2007. 8-2008. 1.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	밴더빌트대학 로스쿨 visiting scholar
2	2011. 8. 29.-2011. 9. 6.	국제노동기구 국제연수센터 (이탈리아, 토리노)	판사, 변호사, 법학 교육자들을 위한 국제노동법 연수에 참가
3	2023. 12. 3.-2023. 12 30.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연임법관연수
4	2024. 9. 16.-2024. 9. 26.	로마, 뮌헨, 스트라스부르	로마: 국제노동법사회보장법학회 제24차 세계회의 참가 뮌헨: 독일 바이에른주 법무부 방문 스트라스부르: 유럽인권재판소 방문

35.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국가 및 도시, 체류기간, 사유, 관련 비용 부담은 누가했는지 상세 적시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6.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달랐던 적이 있는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7. 후보자와 배우자가 사인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사유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8.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 사유와 증빙자료, 또한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9.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논문 또는 연구활동 등에서 논문 표절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40. 후보자의 자녀는 초·중·고·대학(원) 등 재직 당시 각종 인턴(쉽)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 후보자의 장남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2023년 법무법인 세창과 법무법인 LKB에서 실무실습을 하였습니다.

○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 등 적용 가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아래 ‘계엄법’ 및 ‘국회법’ 개정안 관련 후보자의 의견

- (계엄법 개정안 1) 첫째,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함.

- (계엄법 개정안 2) 둘째,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7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논란이 있기에, 이를 삭제함.

- (계엄법 개정안 3) 셋째,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없이 하지 않아 위헌, 위법적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함.

- (국회법 개정안) 넷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하였으며,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함.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단체행동’을 제외하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계엄 시행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할 때까지로 규정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

률안이 최근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관하여는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수렴 및 숙고를 거쳐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특정 법률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하여, (의안번호 2204700) 및 관련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아래 5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화

- (2)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 (3)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선임 확대

- (4)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확대

- (5)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 위 개정안은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임인으로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으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비율을 이사 총수의 1/3로 상향하며,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중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의 수를 현행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의 개정과 관련하여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의무 비율 강화 문제, 분리선임되는 인원을 확대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가 관계부처, 경제계, 학계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십시오.

44.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시 그 법률안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일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부

○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과 한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학계에서도 한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할 경우 구체적인 한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당부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지?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임시대리 및 임명직 공무원인 권한대행의 특성상 현상유지에 국한하여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와 헌법상 권한대행의 직무를 제약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및 재의요구권 행사의 당부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로스쿨 졸업자의 5년 내 응시횟수 5회 제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이른바 '오탈자'가 로스쿨에 다시 입학해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경우에도 입학조차 금지하는 것이 응시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 의견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하여,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시점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설사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위 조항이 변호사시험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21. 12. 23. 2019헌바552).

○ 또한, 해당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3헌마855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현재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위헌 여부에 관한 논의와는 별도로, 이른바 '오탈자'들이 처하게 되는 처지의 어려움과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7. 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는 20번 이상의 거부권 행사해 왔음. 거부권 행사 사안별 후보자의 의견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건별 의견을 의미)

○ 개별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당부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조법 2,3조 입법 필요성과 그 합헌성에 대한 후보자 의견, 노동법원 설립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상세히 작성 바람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아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며,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의 의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의 재표결 절차가 반복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특정 법률안의 합헌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유사한 문제들에 대하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나 향후 대법원의 판결 또는 입법의 연혁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실질적 지배력설을 취하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항소심판결(현대중공업사건)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항소심판결(씨제이대한통운사건)이 모두 상고되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데, 위 현대중공업사건의 상고심 사건이 2024. 3. 11.경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대법원의 판단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연혁적으로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당시 판례도 이익쟁의와 권리쟁의 모두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입법 과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최종건의문에서 ‘하급심 강화’의 한 내용으로 ‘전문법원의 설치’ 항목에 장기과제로 ‘효율적·전문적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전문법원 또는 전문재판부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법원 내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노동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9.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사건이 대법원 계속 중임. 사실심에서 피해자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법무부 장관은 기어이 상고하여 피해자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번 대법 판결 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도 국가가 부득이 상고해야 한다고 보는지?

○ 당사자로서는 상고이유가 있다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쟁점이 동일한 선행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행 사건의 하급심에서 그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는 것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이나 소송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탄핵소추, 정당해산 등의 형태로 사법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의견

○ 사법부 또는 사법과정에 의해 정치 영역의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는 다수의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이에 관한 논의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비교법적인 연구들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는 헌법재판제도, 특히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2004헌나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사건(2004헌마554 등),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3헌다1), 대통령(박근혜)탄핵 사건(2016헌나1) 등은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국내의 논의에 큰 계기가 되어 다양한 주제 및 소재로 다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의 결정은 정치의 영역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민주주의와의 조화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1.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함에도 정치적인 고려를 해 판단하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의견

○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하며, 사법의 정치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독립 및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하여 사법부와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2. 검사탄핵에 대한 의견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 헌법 제65조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검사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여러 건 계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4헌나3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

○ 제21대 국회에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다툰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침해확인청구는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23. 3. 23. 2022헌라2). 또한, 법무부장관과 검사가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법 개정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23. 3. 23. 2022헌라4).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특정 법률이나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사법행정기구의 비법관 구성에 대한 의견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참고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 법원은 재판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행정업무 중에도 재판제도 연구 및 재판을 위한 지원 업무 등 궁극적으로 재판을 잘 하기 위한 업무가 있고, 법관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사법행정기구 구성에 관하여 더 이상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5.16 군사정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5. 16 군사정변을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이고, 후보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2. 1972년 박정희의 유신 계엄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1972. 10. 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도1397 판결, 대법원 2018도6185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3. 12.12 군사반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12·12는 군사반란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4.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5·18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 · 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이러한 정의를 존중합니다.

5. 지난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지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대한민국 상황이 이와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헌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려진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들며 “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과거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등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전두환 장군 등 군인들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12/12)을 통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위 사건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 헌법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국회에 대한 조치 또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포고령 등의 명령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96노1892)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는 행위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동의하십니까?

○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은 그 상고심인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위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판결들에 대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96노1892)에 따르면,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라는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혁명과 같은 사태만이 국헌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와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은 그 상고심인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위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판결들에 대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현재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를 여러기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써 어느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현행법에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검수사까지 포함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지난 12월 1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로 탄핵 심판에 임하시겠습니까?

○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 탄핵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내에서 행사한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계엄의 형식을 빌려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계엄에 요건이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탄핵사유 합치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사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특히, 수사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때와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경우 등을 구분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궐위’란 ① 대통령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②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③ 대통령 취임 후 피선자격의 상실 및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하고, 대통령의 ‘사고’란 ①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처럼 궐위와 사고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으로, 학계에서는 수사로 인하여 대통령이 구속 내지 구속기소된 경우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이를 ‘사고’로 보아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 구속 등의 가정적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혐의가 너무 명확하고, 국정공백이 예상되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의 절차 진행에 관한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중대성과 우리 국가와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속하되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및 심판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원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는 헌법 제65조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이 위해한정도'의 중대함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헌재 2024. 8. 29. 2023헌나4 등 참조).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원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에 관한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3. 후보자께서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로 대하시겠습니까?

○ 16번 항목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4.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4월 3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한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3헌나3)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그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심판절차 정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대해 심판절차 중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심판절차 정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윤석열)에 대한 탄핵 사건(2024헌나8)을 심리중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현재 후보자 등을 제외하고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시작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2024헌나1)과 관련하여,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4. 10. 14. 2024헌사1250).

○ 위 가처분 결정은 심리정족수에 관한 것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의 변론이나 평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언론을 통하여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차례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180일 내에 이뤄졌지만 법관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은 180일을 초과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심판의 종국결정의 선고를 180일 초과한 헌법재판소의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훈시규정임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이와 유사한 민사소송법 제199조 역시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의 선고를 180일 내에 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훈시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탄핵심판의 심리를 불필요하게 지연하여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9.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가장 시급히 해결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 인구감소·고령화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주도하는 일, 사회 내 여러 사회집단 간의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고 운영하는 한편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 신체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기울이는 일, 남북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 공존의 토대를 강화하는 일 등이 우리 사회의 당면하고 있고 시급히 해결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103조가 천명하고 있듯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관계인과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재판하는 것이 곧 법관으로서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31.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내렸던 판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3가합11470 판결).

○ 원고가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인 학교법인의 후생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 대학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학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을 긍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593188 판결).

○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 지급을 긍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나88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나8879 판결).

32.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 헌법재판관이 되면 반드시 추진할 과제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 아직 후보자인 입장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반드시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력,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등을 토대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34.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건 당사자를 넘어 사회 전 영역에 파급력을 가지므로, 헌법재판관이 표면적 분쟁과 갈등 해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는 향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회 각계각층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경험과 의견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항쟁을 수록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정치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에 관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논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개헌 문제는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결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입장에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이어서 국민의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등).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제도에 관하여 5년 단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임제에 관한 헌법 규정은 대통령의 독재라는 우리 헌정사의 쓰라린 경험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의 헌정 운영 과정에서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임기 제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안부터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변경하자는 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개헌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권 등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를 근거로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은 헌법개정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9. 기존의 영장청구주체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사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의 취지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영장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 기존의 영장청구주체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사항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개정사안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0.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를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삭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헌 문제는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위에서 이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남녀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으로, 남성과 여성에 한정되지 않고 성소수자들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남녀평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42.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파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각 영역별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개별 영역의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포괄되지 않는 영역이 있고, 복합차별의 문제도 있으며, 구제절차 등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개별 영역의 차별금지법을 아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 대립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3.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별금지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에 담을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건 당사자를 넘어 사회 전 영역에 파급력을 가지므로, 헌법재판관이 표면적 분쟁과 갈등 해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해왔습니다. 향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회 각계각층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경험과 의견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 '사회적 약자'란 문언상으로는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힘이나 세력이 강한 사람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강자'에 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용어로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용어가 있고, 이를 구별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별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법률적 용어로서 정의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여 헌법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상의 사회적 약자로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상의 사회적 약자와 유사한 지위, 즉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의 집단'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의 집단도 이에 준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이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집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 집단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취약함이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일반 원리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보면 사회적 약자란 '힘이나 세력이 약하여 신체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서 헌법 등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고 일단 개념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46. 여성할당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여성할당제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기용하는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정치와 공직사회(공공부문) 등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 도입되었으나, 현재 민간영역에도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할당제에 관하여, 성평등과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견해와 사회가 변화함으로써 성 불평등의 격차가 줄어들어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여성이 진출하기 어렵거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여성할당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할당제를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7.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의 문제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체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서 다루어지는 인권 문제부터 우선 집중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노동법 분야에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관련 문제 해결에 특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인하여 공적 인물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억압받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 관련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공적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적인물의 공적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업무집행의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 이는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두 상충하는 기본권 중 어느 하나를 앞세우기보다는 조화롭게 향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49.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임신중절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외국인 근로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 중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역시 외국인에게 보장되고,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도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되지만,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 후보자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합니다. 국가가 외국인의 근로권에 관한 입법형성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 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21. 12. 23. 2018헌바524). 그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화로운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현행 형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기타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거나 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물, 게임물 등의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을 원천금지 및 처벌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위 조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므로(헌재 2007. 10. 4. 2004헌바36 참조), 영상물이나 게임물 역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최근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을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4헌마909).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기본적으로 해당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해당 결정에는 경청할 만한 반대의견도 존재하였으므로, 향후 해당 조항에 대한 사건이 다시 제기된다면 그 위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 최근 21만 여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배,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및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집회·시위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인으로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집회 · 시위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185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0. 3. 25. 2009헌가2).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최저임금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최저임금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저임금노동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7.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바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법에 명시된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처벌이 과도하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형사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 위반을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률이 지나치게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는 위헌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으므로(2024헌마287),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 것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차별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매우 절실하므로, 법 적용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위 조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으므로(2024헌마287),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노동전문법원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최종건의문에서 '하급심 강화'의 한 내용으로 '전문법원의 설치' 항목에 장기과제로 '효율적·전문적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전문법원 또는 전문재판부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법원 내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노동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0. 노동쟁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노조법 3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노동조합의 활동, 특히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정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민사면책의 효과가 부여되는 것은 위 노조법 제3조에 의하여 창설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3조에서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서 인정함으로써 부여된 것이고, 위 노조법 제3조는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도출되는 민사면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제3조에 의하여 비로소 민사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조법 제3조에 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민사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쟁의행위 등이 활동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에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민사면책의 효과가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도출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헌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령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단결체에 해당한다면 주체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정당성이 없어 민사면책의 효과를 누릴 수 없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3조에서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본 것(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61. 노동자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노동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는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헌재 2010. 4. 29. 2009헌바168).

○ 대법원도 쟁위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한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는 존중되어야 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2.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감축할 것을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흡수량의 목표치를 설정한 부분 역시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이전 특검 도입 사례들에 비추어봤을 때,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에 대해 여당을 배제하는 특검후보 추천 과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 1인에 대하여 그 후보자 2인의 추천권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의 합의로 행사하게 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196).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최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가 개정되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위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습니다(2024헌라7).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은 원칙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그 비중의 측면에서 동등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상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국회(제41조 제1항)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대통령(제67조 제1항)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와 더불어 3자 간에 다양한 헌법상 권한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5.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제약이 존재하여 무제한적인 거부권은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과 한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학계에서도 한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할 경우 구체적인 한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당부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헌법상 감사원은 독임제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구입니까?

○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11조 및 제12조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헌법 및 감사원법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은 합의제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67.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형제 존폐에 관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라는 점 및 오판의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는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하를 통한 일반예방적 효과 및 피해자의 응보감정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형제 존폐는 국민의 법감정, 시대상황, 세계 각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친 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체수단 도입과 함께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1996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헌재 1996. 11. 28. 95헌바1), 2010년 재판관 5:4의 의견으로(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현재 다시 관련 사건이 계속 중입니다(2019헌바59).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는 상당히 잔혹한 범죄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 책임이 준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 하지만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과 교육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므로 소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인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소년법 폐지는 국민 여론, 소년범 관련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9. 후보자는 존엄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존엄사의 의미와 존엄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계속되어 있습니다(2023헌마1396).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고, 그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위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정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평가하거나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도 위 결정에서 밝힌 바 있듯이,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1. 비동의간음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최근 정치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사실상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취약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은 해외입법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포함하여 성폭력 처벌 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론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고(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기본적으로 위 결정을 존중합니다.

○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안이 여성이나 장애인 등 다른 집단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3. 국가보안법 존치 논란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상황하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시절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국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국가보안법상 개별 조항들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여러 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3헌바382, 2024헌바378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이나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내부와 관련된 각종 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려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위헌 문제가 해소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5.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민의 청원 및 투표에 의하여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를 물러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헌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6. 국민발안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민이 직접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헌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7. 문신사 합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이 이른바 문신사, 즉 비의료인으로서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22. 3. 31. 2017헌마1343등).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위 결정에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법정의견도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국회에서 국민의 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방지 가능성,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지금과 다른 제도를 마련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78. 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제도와 관련해서 구금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가1 사건). 이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정부는 최근 법무부 산하에 외부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22045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해서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가 아니며 이는 위헌결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변협 및 시민사회).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23. 3. 23. 2020헌가1등).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위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하여 보호의 개시 및 연장 여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특정 법률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제도와 관련해서 구금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가1 사건). 이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정부는 최근 구금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18개월 이후에도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보호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2045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의원실 등은 재보호를 인정할 경우 이론상 기간제한 없는 구금이 가능하다며, 이는 위헌결정을 형해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23. 3. 23. 2020헌가1등).

○ 위 질의에 언급된 법률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18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도록 하되, 보호해제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특정 법률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제도와 관련해서 구금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가1 사건). 이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정부는 최근 구금기간의 상한을 최대 36개월(18개월+18개월)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22045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해서 36개월의 상한기간은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가 일시적, 잠정적 강제조치'라고 본 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23. 3. 23. 2020헌가1등).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위 조항에 의한 보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발령 즉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취하는 강제조치인데, 그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특정 법률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부패, 경제범죄) 범죄로 제한했음에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수사범위를 넓힌 것과 관련해 모법위임 위반이란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전보다도 넓어졌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관하여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통령령은 상위법령인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시행령 제·개정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은 시민의 정치적 합의이며 결단이고, 헌법재판은 헌법에 내재된 국민의 진정한 의사와 시대적 요구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헌법재판의 결과가 정치, 사회, 경제 등 영역에 미치는 파급력도 큽니다. 또한,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맥락과 동떨어져 해석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헌법 제103조,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의하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에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좌우되거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고,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과 규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이것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재판관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 이익집단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우리 헌법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외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기능을 담당하는 최고사법기관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이해관계의 대립과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헌법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과 규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력,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등을 토대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5. 현재 헌법재판소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 헌법 제112조, 헌법재판소법 제7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 공백이 발생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동안 공석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공석 상태는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스페인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기만료 재판관의 직무계속제도,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비재판관 제도, 재판관의 증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 조직의 다른 문제점은 사건 심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헌법연구관 조직의 규모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에 비하여 작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조직 개편 등과 함께 헌법연구관의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 조직의 문제점

을 보다 세심히 들여다보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노력하겠습니다.

6. 판사재직 시 내렸던 판결 중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웠다고 생각하는 판결 5가지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3가합11470 판결).

- 위 판결 선고 당시 대법원은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하여 긴급조치 1, 9호를 위헌·무효로 보면서도, 다른 판결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부정("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함으로써 위 위헌·무효 판결의 의의가 퇴색한 상태이었습니다.

-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정하여진 긴급조치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사익보호성 있는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발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설령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위 판결과 같은 취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결국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다른 하급심 판결과 함께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변경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7097 판결).

-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공개한 국회의원과 언론사로 하여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게,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노동3권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가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인 학교법인의 후생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판결례들은, 근로자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원고용주가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제3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원고용주인 파견회사가 근로자를 6,000여명이나 고용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파견업체 중 하나이어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로자와 파견회사 사이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파견회사가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해 파견사업주로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파견사업주로서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와 제3자인 사용사업주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간접고용에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있어 중간매개자의 실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던 기존 판결례와는 달리 실질적인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길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대학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학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을 긍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59318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시간강사가 실제로 강의를 진행한 강의시간 이외에 강의 준비시간과 학사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아 강의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이후 대법원도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강의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원고들을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부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 지급을 긍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나88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나8879 판결).

-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 관하여 초등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를 보내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피고)와 사이에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① 피고에 의한 업무내용의 결정과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③ 비품·도구의 제공과 업무의 대체성 여부, ④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 위험 감수 여부, ⑤ 보수의 성격 등에 관한 사정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종합하여 컴퓨터 교육 강사인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외형상 개인사업자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와 위탁업체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를 세밀하게 논증하여 컴퓨터 교육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보호의 범위를 방과 후 교사에까지 확대한 판결입니다.

7. 판사재직 시 내렸던 판결 중 스스로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판결 5가지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아쉬웠던 일은 검찰의 선별 기소에 대하여 공소권 남용 법리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저의 지혜가 부족하여 상급심을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8. 판사재직 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판사재직 시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 9항 답변에 기재한 판결들이 약자나 소수자 보호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재판의 절차와 실체 모든 면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및 결정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원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이며,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의 개인적인 평가를 밝혀주십시오.

○ 지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거둬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당시 외신은 우리나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단지 경제적 성장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치·문화 영역에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하였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3.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고, 그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위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정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평가하거나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도 위 결정에서 밝힌 바 있듯이,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을 정부에게만 준 이유,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조항은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하여 정당이 사라졌던 과거를 반성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만이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당시 참고하였던 입법례가 독일 기본법인데, 여기에서는 정당해산을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고 규정할 뿐 정부를 청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도 정당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의 청구는 독일 연방의회나 연방참사원, 연방정부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헌법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을 정부에게만 준 이유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후 헌법개정을 통하여 국회 등에게도 위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는 헌법개정사안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여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와 관련

(1) 재판헌법소원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갈등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변형결정의 기속력

- 대법원은 국각배상법상 구상권 사건등에서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은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지 못하는 단순한 견해표명에 불과하다며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헌재의 변형결정이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련

-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나 대법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 관습법

- 대법원은 관습법은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헌재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 위와 같이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우리 헌법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외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부여한 독자적인 권한에 기하여 각각 일반재판기능과 헌법재판기능을 담당하는 최고사법기관입니다.

○ 다만, 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배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해석, ② 변형결정 중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문제, ③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 ④ 관습법의 위헌법률심사 가능성 문제 등에 관하여 양 기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양 기관의 역할이 상충할 여지도 있습니다.

○ 현행 헌법 및 법률 아래에서 양 기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책무를 지닌 헌법기관으로서, 가급적 위와 같은 견해 대립이나 역할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에 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사법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권리구제의 실효성, 헌법재판의 역사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6.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 지명하도록 한 헌재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3인씩 임명하거나 선출, 지명하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관하여는, 헌법재판관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한 것에 민주적 정당성이나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나, 시민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개선책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우리 헌법이 규정한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의 경우 전원 국회 동의(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장과 국회 선출 몫(3인)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이처럼 규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관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달리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3인씩 임명하거나 선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도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 제112조, 헌법재판소법 제7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남은 재판관 임기만 재직한다는 견해와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모두 재판관으로서 임기를 마친 때에 헌법재판소장 직에서 퇴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헌법재판관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 및 법률 아래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남은 재판관 임기 동안만 헌법재판소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분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대법원은 대법관 중 한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헌법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심판사무를 담당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책무를 다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처를 관할하는 사무처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의 수는 9명으로 헌법에 정해져 있어, 대법관의 수가 14명이고 그 수를 법원조직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할지 여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 헌법재판관 등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112조, 헌법재판소법 제7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 공백이 발생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동안 공석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다른 심판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하여 탄핵심판의 직전 또는 탄핵심판 중에 헌법재판관의 퇴임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 후임 재판관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재판관의 공석 상태는 그 무엇보다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이므로 이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독일과 스페인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기만료 재판관의 직무계속제도,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비재판관 제도, 재판관의 증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는 헌법개정사항이라는 의견과 법률로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개헌을 통하여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란의 소지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나, 헌법개정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한편, 헌법재판관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하는 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안 등 여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더라도 현행 헌법에 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2.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면,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어 헌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도 사법부 독립 및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예산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의는 헌법재판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위와 같은 권한이 부여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예산 통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하고, 법률안 제출권 등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서는 헌법의 개정까지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심판기간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심리 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며, 심리 기간 단축을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장기미제 사건이 적체되어 있고, 한 사건의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원화되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거나 숙고가 필요한 사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법조문으로만 존재하였던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등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적인 헌법소원심판에 들일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최근 헌법연구관을 증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해결하고자 헌법재판소에서는 최근 장기미제부라는 일시적 조직을 운영하거나, 사전심사 전담부를 두고 전속부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4인으로 구성된 소부를 운영하여 전원 일치로 기각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후보자 역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한 결정을 통하여 분열과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시처리 사건을 선정하고, 해당 사건에 관하여는 헌법연구관이 적시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집중 심리를 하거나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와 같은 사건일수록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학술적 논의와 해외 입법례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도 크므로, 신속성만 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건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 개헌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헌이 이뤄진다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 발전 및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개헌 후 35년이 넘은 상황에서 그 사이 일어난 많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개헌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이므로, 개헌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헌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개헌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국민의 저항권이 헌법상 보장되는지와 저항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 · 비폭력, 적극적 ·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5. 16. 군사정변에 대하여 이를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는 시각과 군사혁명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5. 16 군사정변을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이고, 후보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28.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반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들이 12·12 군사반란에 이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라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이러한 정의를 존중합니다.

○ 대법원은 '12·12는 군사반란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29.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정치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것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헌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흉악 범죄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 입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배제되었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배제되었으며, 내란죄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배제되었습니다.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증거가 산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범인이 범죄 후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헌재 2017. 11. 30. 2016헌바157 참조).

○ 과학기술의 발달로 증거확보방법이 발전하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실체적 진실발견이 가능해졌으며,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를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처벌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소시효 배제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배제대상의 추가 확대는 범죄의 실태, 국민의 법 감정, 특히 사회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범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형제 존폐에 관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라는 점 및 오판의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는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하를 통한 일반예방적 효과 및 피해자의 응보감정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형제 존폐는 국민의 법감정, 시대상황, 세계 각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친 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체수단 도입과 함께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1996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헌재 1996. 11. 28. 95헌바1), 2010년 재판관 5:4의 의견으로(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현재 다시 관련 사건이 계속 중입니다(2019헌바59).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알코올 섭취 등을 핑계로 심신미약 감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 또한 높습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자제력이 저하되는 등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에 따라 음주는 범행 동기,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음주 후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정책적 관점과 형법상 책임원칙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3.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공동체가 함께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 피해자가 형사 사법 절차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전통적 형사사법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필요하다고 보는지,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회복적 사법은 단순히 범죄자의 처벌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함께 해결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적 사법을 통하여 범죄자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형사 사법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피해로부터의 회복에 초점을 두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통체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인 형사 제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기존 형사사법절차를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4.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높은 배상액을 통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손해배상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과잉배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5. 공적 의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공적 의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있어 왔고, 그러한 맥락에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민사소송법학회가 법원행정처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2017. 4.경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축소, 피고의 재정적 파탄 방지, 소송절차의 신속한 종료, 전략적 봉쇄소송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거 관점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주에서 법원이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률['Anti-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법']이 입법되어 있다고 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법률안의 추진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적 의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남소가 이루어질 경우, 청구의 실체가 없음에도 제소자의 이익이나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공적 참가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특히 당해 소송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활동까지 위축시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동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6.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는 상당히 잔혹한 범죄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 책임이 준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과 교육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과 교화에 중심을 둔 정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이 사회의 건실한 인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가정,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별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7.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활발히 기소가 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모욕죄의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은 등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과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 처벌 조항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조항의 폐지 여부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매체환경,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한 위축효과, 사생활의 자유 및 인격권에 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과 관련하여 2021년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모욕죄 처벌 조항과 관련하여 2020년 재판관 6:3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등). 기본적으로 해당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해당 결정에는 경청할 만한 반대의견도 존재하였으므로, 향후 해당 조항에 대한 사건이 다시 제기된다면 그 위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혐오 표현이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혐오 표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재 혐오표현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혐오표현의 개념이나 범위를 정확히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는 더욱 견해가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혐오표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규제방법 중 하나입니다.

○ 상대방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과 배제 수준의 혐오표현은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개념요소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혐오표현의 포섭 기준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운용될 경우 등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율은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논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5. 26. 2015헌바68등).

○ 일정한 요건 하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 현재 우리 사회에 산적한 여러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신체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서 다루어지는 인권 문제부터 우선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어진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한편, 노동법 분야에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관련 문제 해결에 특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

○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 왔으나,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관한 제도는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2.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수사기관에 관한 제도는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권 및 소추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의 구체적인 조정 · 배분의 문제는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3. 3. 23. 2022헌라4).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영장 없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위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제한조치, 특히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하여 위헌·위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행위 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인터넷회선을 포함한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청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우나, 범죄수사나 국가안보의 목적만을 내세워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감청을 실시하는 수사관행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위헌·위법으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의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 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이 실제 감청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수집되어 수사기관에 저장되는데도, 그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의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이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같은 법 제12조의2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과 폭동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87조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중 하나의 목적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란 우리 헌법을 지배하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 즉 헌법내란의 목적을 의미하고, 이를 형법 제91조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태도는 형법 제87조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이라는 통설의 태도와 같은 입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46.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질서 아래에서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결들을 존중합니다.

47.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통치행위이므로 사법부가 그 요건의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왕조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국헌문란의 죄(내란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죄의 수단이 계엄이므로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수단으로 하여 국헌문란을 한 경우에 그 범죄의 성부를 논함에 있어서 계엄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헌재 1996. 2. 29. 93헌마186), 대법원 역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의 과도한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할 법원의 책무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통치행위라고 하여 사법심사 대상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위 사건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태도는 형법 제87조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이라는 통설의 태도와 같은 입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49. 계엄법 제2조에서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후보자는 형식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인정하나?

○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헌재 1996. 2. 29. 93헌마186), 대법원 역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의 과도한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할 법원의 책무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위 사건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헌법 또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도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헌재 1996. 2. 29. 93헌마186), 대법원 역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의 과도한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할 법원의 책무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통치행위라고 하여 사법심사 대상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위 사건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도의 통치행위가 사법적 심사대상이 된다면 처벌할 수 있나?

○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위 사건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윤, 계엄사태의 경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나?

○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안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위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

○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 한편,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

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위 사건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대 헌법질서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아주 낡은 논리라는 반박도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

○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헌재 1996. 2. 29. 93헌마186), 대법원 역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의 과도한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할 법원의 책무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통치행위라고 하여 사법심사 대상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2024헌마1109 등) 및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2024헌나8)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고, 위 사건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있다. 이 평가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공감한다면, 현재 헌법의 어떠한 측면, 어떤 의미가 제왕적 요소라고 생각하나?

○ 현행 대통령제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유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권력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헌법 66조 1항은 대통령에 국민대표자의 지위를 부여했다. 대통령이 100%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을 하고 국민통합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헌법적 임무라고 본다. 그러나 많은 대통령들이 자신의 지지자, 진영에 기반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했던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통합하여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그와 같은 헌법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통령이 국민통합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에 있어, 과반수를 넘지 않아도 당선이 가능한 현행 단순다수대표제가 아닌 절대다수대표제가 헌법 취지에 맞다고 보여진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사항인가, 법률 개정 사안인가?

○ 유효투표의 절대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보다 대통령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운영의 번거로움과 선거비용의 증대를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절대적 다수대표제의 도입에 관해서는 현행 헌법이 상대적 다수대표제의 채택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견해와 헌법 제67조 제2항, 제3항은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전제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헌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모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자의 견해가 다수의 견해로 보입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51조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를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했으나, 1960년 유신헌법에서 동일 조항에 '국가의 원수' 지위를 부여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안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국가 원수'의 개념은 대통령이 타 헌법기관을 초월한 우월적 지위로 인식되도록 유도한다는 학계나 역대 개헌자문위의 의견이 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 원수'의 개념이 대통령을 타 헌법기관을 초월한 우월적 지위로 인식되도록 유도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대통령이 입법, 사법의 다른 국가권력기관을 압도한 적이 있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공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과거에는 안보, 치안 유지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국가의 중심 임무이던 시대였으나 현재는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임무가 된 시대이다. 국가의 규모, 역할이 커진만큼 임무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생활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소득, 돌봄, 환경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습니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결정 참조).

○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말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권의 이념적 기초로서 원리적 규정이라면 말씀하신 국민생활기본권은 이에 기초하여 국가의 급부에 관한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일반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인 사회권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기본권을 신설하는 것은 헌법개정 사안으로서,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

니다.

○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합니다.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12. 헌법 91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설정되었으나, 실질적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다양한 제정당 대표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에 협력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 헌법 제91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헌법조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제91조에서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자문기관과 그 지위가 다르고, 이는 국가안보, 국가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아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협력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 과정에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견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정당 대표자들의 참여와 같은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헌법은 법 위의 법으로서 기본법, 일반법, 상식법이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현행 법관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5조를 변경하는데에 후보자의 의견은? (외국사례 추가)

○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였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이 헌법 및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닐 것을 보장하여,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인 헌법재판의 기능과 성격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은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법률 해석 및 적용 능력이나 실무 경험보다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관한 지식과 식견, 인권에 대한 이해와 철학 등이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조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교수 등 비법조인에게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해외 입법례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은 우리 사회에 가치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다채로운 가치관과 철학이 반영되도록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조인 외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개정사안

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 사법, 감사에 관련한 헌법기관의 장과 방송사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정파에 따라 추천하는 일로 정치적 논쟁이 있다. 이를 탈피하여 수사·기소·감사와 방송언론 영역의 장을 임명하는데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헌법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영)방송사 사장 등의 기관장 임명에 별도의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적 추천기구를 두는 데에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 일반적으로 말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게 보장되어야 하는 주요 기관장 임명에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하게 한다면, 시민의 권력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위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며 임명권자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분립된 권력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국회가 폭넓은 의견수렴과 숙고를 통하여 마련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보다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중지) 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후 기소 시 헌재 심판절차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심판절차 정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윤석열)에 대한 탄핵 사건(2024헌나8)을 심리 중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현직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 공백이 발생함. 헌법,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을 개정하여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 헌법 제112조, 헌법재판소법 제7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 공백이 발생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동안 공석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다른 심판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하여 탄핵심판의 직전 또는 탄핵심판 중에 헌법재판관의 퇴임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 후임 재판관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재판관의 공석 상태는 그 무엇보다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이므로 이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독일과 스페인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기만료 재판관의 직무계속제도,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비재판관 제도, 재판관의 증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무총리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학계 등에서는, 그 임시대리의 성격상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 권한대행의 계기가 된 원인이 궐위인지 사고인지에 따라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 문제되는 직무에 관한 권한대행의 권한의 성격이 실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견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한 여러 정치적 현안과 관련될 수 있는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이 존재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현재 문제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인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한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은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법관 자격을 가진 자만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관 업무 특성상 법률가의 업무 수행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시민 보편적 합의인 헌법에 대한 해석과 재판은 더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함. 해외주요국은 ?법재판관 자격 규정이 부재하거나, 헌법 교수, 행정공무원 등도 헌법재판관 자격을 가지도록 규정함. 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였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이 헌법 및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닐 것을 보장하여,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인 헌법재판의 기능과 성격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은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법률 해석 및 적용 능력이나 실무 경험보다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관한 지식과 식견, 인권에 대한 이해와 철학 등이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조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교수 등 비법조인에게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해외 입법례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은 우리 사회에 가치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다채로운 가치관과 철학이 반영되도록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조인 외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개정사안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 관련하여 당시에는 '서울=수도'가 관습헌법이라고 결정, 관습헌법에 의해 국민 삶 영향 받는 것이 우리 법 체계상 가능한지? 후보자 의견은?

○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사건에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여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법률로만 규율하는 것은 헌법 제130조 소정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결정).

○ 성문헌법이라도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담을 수는 없으므로 그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습헌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관습헌법은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중요한 기본적 사항에 한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선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2004년과 2024년에 어느 정도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7개와 국책연구기관 16개가 자리하고 있으며, 세종시 인구는 출범 당시(2012년) 약 10만 명에서 2024년 현재 약 39만 명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수도 지정에 대하여는 공론화 등의 논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해외 사례 중 행정수도 옮기는데 헌법적 결정한 사례, 또는 수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 브라질은 수도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이전하면서, 헌법 제3조에 명문으로 브라질 수도를 브라질리아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독일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1991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제22조에 독일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그 밖에 수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나라로는 러시아(제70조), 중국(제138조), 오스트리아(제5조), 캐나다(제16조), 이탈리아(114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